

신종족메시아 훈독가정교회 운영 규정



천일국 6년 천력 5월 23일(양력 2018. 7. 6.)

신한국가정연합

신종족메시아 훈독가정교회 운영 규정

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신설되는 훈독가정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하여 훈독가정교회 운영의 올바른 인식과 효율성을 갖고, 신종족메시아 가정이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천일국 국민 교육과 참가정실천운동의 통반격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 명칭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이하 한국본부)는 읍면동 단위 이하에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여 훈독가정교회를 운영한다.

1. **교회소속 훈독가정교회(이하 훈독회)** : 12가정 이하로 구성된 훈독회로서 지역교회에 소속된 소그룹이다. 지역교회장의 주관을 받아 지역에 사는 축복가정 3가정이 한 조가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교회 내 소그룹 조직이다. 교회소속 훈독가정교회는 ‘훈독회’로 명명하고, 훈독가정교회장은 ‘훈독회장’으로 칭한다. 또한 훈독가정교회 모임은 ‘훈독예배’ 또는 ‘훈독회’로 명명한다.
2. **교회독립 훈독가정교회** : 430가정 축복을 완료한 신종족메시아 가정은 교구 또는 교회의 발령을 받아 훈독가정교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동의 독립 훈독가정교회로서 지역교회와 같이 건물, 재정, 예배, 교육을 위한 권한을 갖는 교회이다. 교회독립 훈독가정교회는 ‘훈독가정교회’와 ‘훈독가정교회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훈독가정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은 ‘훈독예배’ 또는 ‘훈독회’로 명명한다.

제3조 【 주요사업 】

훈독가정교회는 천일국 안착과 심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훈독가정교회의 핵심가치는 훈독, 교육, 축복, 확산이다.

1. 말씀을 훈독하고 교육하여 참가정의 심정문화를 생활권으로 정착시킨다.
2. 모든 축복가정이 신종족메시아 사명(12, 120, 430가정 종족편성완료)을 완수하도록 돕는다.
3. 이웃과 종족에게 참가정이상교육을 통해 축복에 이르게 하고 이를 대중화 한다.
4. 천일국 완성을 위해 훈독가정교회를 확산하고 훈독가정교회장을 양육한다.
5. 훈독말씀을 실천하며 통반격파활동(참가정, 순결, 봉사, 평화, 취미활동 등)을 통해 창조본연의 관계를 회복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한다.

제4조 【 전국 조직 】

훈독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조직으로서 한국 본부 산하에 신종족메시아 운영위원회와 가정연합 지구, 교구, 교회가 있다.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산하에는 다양한 형태의 훈독회가 있다.

제5조 【 훈독회 운영】

1. 훈독회는 참부모님의 축복가정이상 실현을 위한 기초신앙공동체이며 적정한 인원은

12가정 이하이다.

2. 훈독회의 임원으로는 훈독회장(회장/리더), 부회장(인턴리더), 총무가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향후 훈독회의 회장이 된다. 그리고 총무는 회장을 도와 경리 및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3. 훈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도부장, 전도부장, 찬양부장, 봉사부장 등을 둘 수 있다.
4. 훈독회는 철저히 교회에 소속되어 주중에 모임을 갖되, 성일에는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5. 훈독회 모임 장소는 소속 식구의 집을 모임장소로 하며 명패를 부착할 수 있다.
6. 훈독회의 재정은 지역교회장과 식구들의 협의에 따라 훈독회 모임 때 감사헌금을 통해 충당하거나 헌금은 지역교회에 봉헌하고, 일정부분(헌금의 10%)을 훈독회 운영비용으로 지원받는다.
7. 훈독회장은 훈독회 모임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8. 매주 지역교회장에게 훈독회 모임 내용을 교육받고, 모임 후 보고를 실시한다.
9. 훈독회는 교회 내 삼위기대 또는 소속 식구들의 믿음의 자녀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새식구 전도를 통해 새로운 훈독회로 분가할 수 있다. 믿음의 종족을 중심한 독립 훈독가정교회를 지향한다.
10. 새롭게 전도된 새식구는 지역교회 신앙교육프로세스(전도-양육-축복-사역)에 연결하여 교육한다.

제6조 【 훈독가정교회 승인 기준 】

1. 훈독가정교회장 자격

신종족메시아 읍면동 책임자로서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고, 훈독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가정으로 교구장 또는 교회장이 임명한다.

2. 재적인원

직계 또는 믿음의 자녀와 종족으로 이루어진 훈독가정교회 정회원 식구 12가정을 확보하고, 매주 참여인원(성인기준)이 3가정 이상 되어야 한다. 정회원이란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훈독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3. 모임장소

정기모임 장소는 일정한 곳에서 갖도록 권장하며, 규격이나 공간의 형태는 승인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승인절차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교구와 지구를 거쳐서 한국본부에서 접수, 평가, 협의하여 독립 훈독가정교회로 승인하며 공문으로 고지한 후 그 효력을 갖는다. 1년마다 훈독가정교회의 활동내용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 갱신한다.

제7조 【 조직 】

1. 훈독가정교회는 참부모님의 축복가정 이상 실현을 위한 읍/면/동 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지역신앙공동체이다.
2. 훈독가정교회는 지역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규모에 따라 훈독회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예배 및 모임】

1. 지역교회와 동일한 권한으로 혼독가정교회장은 예배 집례와 축도권을 갖는다.
2. 월 1회 또는 정기적으로 교구 또는 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9조 【재정 및 실적】

1. 교회의 재정은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식구들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2. 혼독가정교회의 헌금의 십일조는 교구 또는 교회에 납부한다.
3. 예배 및 헌금의 실적은 소속 교구 또는 교회의 실적으로 귀속된다.

제10조 【식구관리 및 교육】

1. 혼독가정교회로 운영하기 위한 설립 식구는 혼독가정교회장의 믿음의 자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의 식구가 임의로 독립 혼독가정교회로 이관될 수 없다.
2. 새롭게 전도된 새식구를 신앙교육프로세스(전도-양육-축복-사역)에 따라 혼독가정교회장으로 성장시킨다.

제11조 【혼독가정교회장 지위】

1. 교구발령 혼독가정교회장은 풀타임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장급 목회자이고, 교회발령 혼독가정교회장은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부교회장급 목회자이다.
2. 혼독가정교회장으로 인준 받은 자가 한국본부와 혼독가정교회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

제12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규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본 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의 승인과 공표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 1. 혼독가정교회 설립신청서 양식
2. 혼독가정교회 식구명단. “끝”

훈독가정교회 설립 신청서				담당	국장	부회장	회장
신청자 신상기록							
소 속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가 정				
주 소							
학력 및 주요경력							
소 재 지							
주 소							
집회소 형태	가정집, 건물(임대, 구입)		건평				
재 적 현 황							
재적가정수	가정	성 인	중고생	계			
		명	명	명			
첨부서류 : 신청자 이력서(사진첨부)1통, 식구명단(첨부#2참조)							
한국본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훈독가정교회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천일국 년 월 일(양력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 구 장 :						(인)	
교 구 장 :						(인)	
교 회 장 :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귀하							

첨부#2

훈독가정교회 식구명단

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